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6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이상헌・안민석・박재호

김진표 · 김병욱 · 김민석

홍정민 · 신정훈 · 김기현

김홍걸 · 김성주 · 문진석

한병도 의원(13인)

제안이유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을 지닌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보존관리정책은 자연유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및 불편·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문화재가 갖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저해하여 천연기념물·명승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

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관리·활용되어야 함(안 제3조).
- 나.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 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 바.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 전파·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9조).
- 사.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 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 아.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 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소유자, 관리단체 및 토지소유자 등과 토지의 이용 및 관리방법이나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 차.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연구· 전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44조).
- 카. 문화재청장은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유산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5조).
- 타.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 자원의 보호·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

진하도록 함(안 제49조).

파.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및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 나.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 다. 지형ㆍ지질ㆍ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라. 천연보호구역
 -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학술 적·경관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 5. "관리구역"이란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유산의 사육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 명승 또는 시·도자연유산(이하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 2. 자연유산의 보존 · 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자연유산 보존 · 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 3. 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조사 계획
 - 4.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 5.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 6. 자연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계획
 - 7.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제교류와 남북한 교류 ·협력
 - 8. 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 9.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② 보호계획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보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시·도지사는 보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⑦ 보호계획 및 제6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 [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 공사의 시행이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을 지정하면 그 지

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연유산의 관리 제1절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 제9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 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항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중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동·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

- ·도래지·번식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 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명승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2조제1항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지정할 때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 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1.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가치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조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명승(제11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까지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알려야 한다.
 - ② 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13조(지정의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 기념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 그 역사적·예술적 ·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

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시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9 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 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 지에 대해서는 제12조를 준용하되,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 제15조(허가)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 거하는 행위
 - 나. 천연기념물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 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 ·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 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수면의 매립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8조제4 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학술적·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 위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과 시·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4호의 행위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있다.
-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 •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 3.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 및 시행계획과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허가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제4항 및 제21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천연기념물 수출 등의 금지) ①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 1.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
 -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반출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목적 달성이나 천연기념물의 안전 등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천연기념물을 표본· 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 ⑦ 문화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천연기념물의 반출·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신고)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5.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6. 제15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 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7.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천연기념물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 8.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9.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 1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한 경우
- ②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

- 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 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0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명할 수 있다.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 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동· 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5.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의 부담으로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문화재 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 관할 시·도지사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 자등,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14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제1호·제3호, 제57조를 준용한다.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 제23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관리하 여야 한다.
 -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 다.
- 제24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국유에 속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관리단체의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 단체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관리단체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 부렁으로 정한다.
- 제26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및 관리,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 조 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경우 문화재청장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직권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28조(조사 결과의 활용) 문화재청장은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천연

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금지 또는 시설 의 설치·제거 및 이전
- 4.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29조(질병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확산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질병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단체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전염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행하여야 한다.
 - 1. 전염병 예방접종
 - 2. 정기적인 질병진단
 - 3. 방역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

- ⑤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에 걸려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살처분의 제외 또는 연기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1.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 2.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해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 제3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
 -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 나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단체는 종의 보존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산하여 사육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및 분산 사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조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운영자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조난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치료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상시관리 등)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 물인 식물의 지속적인 계측 및 자료관리(이하 이 조에서 "상시관리" 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상시관리를 위하여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인 식물이 식물의 소유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상시관리를 수행하는 자는 연도별 상시관리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상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소유자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상시관리의 방법,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4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의 상시적·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 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①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명승의 관리 단체는 해당 명승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청장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 2. 명승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3. 명승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4. 명승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5. 명승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명승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문화재청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 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시 · 도자연유산

제38조(시·도자연유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1조에 따른 명승으 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 화재보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이하 "시·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동·식물을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도래지·번식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 을 함께 시·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자연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있도록 "자연유산"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9조(시·도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준용) ① 시·도자연유산의 지정, 지정 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

- 용한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시·도자연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관보"는 "공보"로 본다.
- ② 시·도자연유산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통지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시·도자연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 2. 시 · 도자연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3. 시·도자연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 • 관리 및 활용

제41조(자연유산 관리협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 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사실을 그 상대방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관리협약의 체결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자연유산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 협력
- 제43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 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4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등) ①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 및 연구·전시를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둔다.
 - ② 국립자연유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자연유산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
 - 2.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 모니터링 및 상시관리
 - 3.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 4. 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 · 보존 및 관리
 - 5. 자연유산 관련 역사 · 민속 · 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 6. 자연유산의 전시·교육·홍보
 - 7. 국제 교류 및 남북 협력
 - 8.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ㆍ지원
 - ④ 국립자연유산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자연유산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할 수 있다.
 - ⑥ 국립자연유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① 국가는 남북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남북 간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 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와 문화재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보존·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6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천연기념물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7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 승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하여 증식·복원 등 필요한 보존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도래지·번식지의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등에게 제41조에 따른 관리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 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9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
 - 2.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의 정보수집, 확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3.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0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있다.
 - ② 후계목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후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 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 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 제51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①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 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공개동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 2. 공개동굴의 대기 · 식생 등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2조(전통조경의 보급·육성)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전통조경 현황 조사 · 연구
- 2. 전통조경을 통해 조성된 역사문화경관·복합경관의 가치 연구
- 3. 전통조경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 4. 전통조경 기법의 계승 및 관련 재료・수종(樹種)의 보급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3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 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작 성·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조경 표준설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문화재청장은 각 유형별 표준설계를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궁궐조경
 - 2. 서원 · 향교조경
 - 3. 민가조경
 - 4. 사찰조경
 - 5. 별서조경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소유자등에게 보수·복원정비 사업시 제 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 다.
- 제54조(전통조경의 세계화)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통조경 국내외협력망 구축 및 운영
- 2. 해외소재 한국전통조경공간의 조성 · 관리 및 홍보
- 3. 전통조경 관련 국제박람회의 개최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5조(경비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아니하는 자연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5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변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제1항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손실의 보상)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제5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범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 존·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9조(준용규정) ①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 9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사적"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문화재"는 "자연유산"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등"으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이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으로 본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88조를 준용한다.
 -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 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 취소

-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8조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의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 을 제출하는 자
 - 2. 제16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에 대한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4. 제58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자

제6장 벌칙

-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5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또는

- 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동물, 식물 등을 포획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관리구역 내로 반입한 자
- 4. 제31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한 자
-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물건을 몰수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천연기념물(시·도자연유산을 포함한다)로 지정 또는 임시지정된 동물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 입하거나 살포한 자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허가 없이 제15조제1항제3호(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천연기 념물 또는 명승을 공개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한 자(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 3. 제25조제2항(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 한 자
- 4.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문화재가 자기 소유인 자
- 5. 천연기념물·명승이나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의 관리·보 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 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 6.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 7.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의 경계 표시를 고의로 손괴,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구역의 경 계를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6조제4항(제27조제2항과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한 자
 - 2. 제26조제5항 본문(제27조제2항과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방해 한 자

- 제65조(벌칙의 준용) ① 벌칙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등"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 승"으로 본다.
 - ② 벌칙에 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 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와 "지 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로, "임시지정문화재"는 "임시지정천연기념 물" 또는 "임시지정명승"로 본다.
- 제66조(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제5호·제8호·제9호·제10호(제39조제 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9조제1항제4호(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9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천연기념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이 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및 보호물·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중 "제48조제2항·제3항"을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3항"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15조,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 정명승"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76조제5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 또는"을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으로한다.

④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①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②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적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으로 한다.
- ⑥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도서"를 "도서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도서"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 각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로 한다.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을"로 한다.

⑨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 유산 및 시·도자연유산
- 마. 라목에 따른 자연유산 및 시·도자연유산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항에 따른 보호구역
- 바. 라목에 따른 자연유산 및 시·도자연유산과 마목에 따른 보호 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으로 한다.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한다.
-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를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호 구역(천연기념물・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를 "보호 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로 한다.

-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b)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0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⑧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5호 중 "허가"를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자연공원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 「자연공원법」"으로 한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제35조"를 "제15조"로, 같은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40조"를 "「자연유산의 보존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제3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제3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로,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제35조"를 "제15조"로 한다.

제5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 1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제5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1 1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보호구역"을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49조"를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 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로,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을 "제27조·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9조제2 항"으로 한다.

②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 1호·제2호"로,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②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66조"를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③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이"로, "「문화재보호법」이"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호 중 "지정문화재인"을 "지정문화재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 유산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시·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 및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